

부산고등법원 2023. 7. 26 선고 2022나538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항소인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정인 담당변호사 김정수, 박지수

피고, 피항소인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임호택

변 론 종 결 2023. 6. 14.

판 결 선 고 2023. 7. 26.

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. 6. 8. 선고 2020가합50818 판결

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2. 주위적으로, 피고는 C에게 [별지]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 2019. 8. 6. 접수 제413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예비적으로, 피고와 C 사이에 [별지]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9. 7. 2.자 매매계약을 232,000,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232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

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고쳐쓰는 부분

제1심판결문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.

『③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보험료 3,695,100원(갑 제6호증의 6 참조)의 경우, 체납기간이 2019. 11.부터 2020. 4.까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(2019. 7. 2.)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.

④ 제주세무서장이 C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합계 711,616,980원(갑 제6호증의 4 참조) 중 588,529,980원 부분은 그 법정기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(2019. 7. 2.) 이후인 2019. 11. 1.부터 2019. 12. 2.까지이므로,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가 부담하였던 조세(종합소득세)채무는 123,087,000원(= 711,616,980원 - 588,529,980원)과 2018년도 조세(종합소득세)채무 66,679,320원(= 14,954,080원 + 36,673,180원 + 32,008,240원, 을 제1호증 참조)을 합한 189,766,320원이다(다만, 위 66,679,32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인 2019. 7. 16. 모두 납부되었다).

⑤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45,000,000원(갑 제6호증의 3 참조)의 경우, 그 전세임대차계약 체결일이 2019. 11. 15.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(2019. 7. 2.)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.

⑥ 재산세(토지, 주택) 3,719,420원(갑 제6호증의 5 참조)의 경우, 그 법정기일이 2019. 7. 10.부터 2019. 9. 10.까지 사이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(2019. 7. 2.) 이후에 발생한 것이다.

⑦ 결국 위 ① 내지 ⑥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C의 소극재산은

2,324,858,485원{= 원고가 주장하는 C의 소극재산 3,579,123,665원 - K조합 대출금 640,000,000원 - 원고의 C에 대한 2019. 12. 19.자 대여금 40,000,000원 -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보험료 3,695,100원 - 제주세무서장이 2019.경 C에게 부과한 종합소득세 중 법정기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인 종합소득세 합계 588,529,980원 -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45,000,000원 - 재산세(토지, 주택) 3,719,420원 +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C가 납부하여야 할 2018년 종합소득세 합계 66,679,320원}으로, C의 적극재산(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도 3,475,156,946원)에 훨씬 미달하고 있으며, 달리 C가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 이외에 또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.』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김주호, 판사 임상민, 판사 김영환

[별지]

1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D 전 749㎡
2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 전 17㎡
3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P 전 50㎡
4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Q 전 5,479㎡
5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R 전 339㎡
6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S 전 3,230㎡
7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T 수도용지 35㎡
8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U 전 56㎡
9.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V 전 18㎡. 끝.

